

## 제2장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제 조 목적** 이 장은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사분석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 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조사분석 담당부서”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 언론기관 배포 인터넷 게재 영업점비치 영업직원에 대한 통보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조 조사분석의 원칙**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금융투자회사는 제 8항 본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 4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 4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제 4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을 조사 분석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신설

투자의견의 적정성 신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4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 영 제 조제 8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 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 부서를 통하여 할 것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 법인영업 및 고 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제 조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 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 호 바목은 제외한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 자신이 안정조작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나 자신이 인수 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등 이하 주선등 이라 한다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 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 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의 분의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개정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

- 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등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 및 제 5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을 보유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 2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있는 법인 개정
-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되는 법인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자신이 보증 배서 담보제공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제 2항 제 1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 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법인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자신을 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신설
- 의 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신설 개정
-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제 항제 호나목 및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조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협회의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연간 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한다

대표주관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가 증권시장 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

나 영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 개정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제 항에 따라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연간 회 이상 조사분석자료 투자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 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 를 공표하거나 제 조제 항제 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 조 매매거래 제한**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제 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제 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 증여 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 조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조사분석 대상법인 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조사분석 대상법인 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 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제 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제 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 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 수량 및 행사가액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 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강연이나 설명회 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제 항에 불구하고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 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선물 주식옵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주권관련사채권 주식매수선택권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제 조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 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 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연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신설

목표가격과 해당 주식의 주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변동추이 그래프로 표기 신설

조사분석자료에 제시된 목표가격과 다음 각 목의 주가와 의 괴리율 목표가격 대비 다음 각 목의 주가와 목표가격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며 제 호의 변동추이에 병행 기재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동 기간 중 목표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최고주가 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



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최저주가 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 다만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중 무상증자·무상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까지의 일 평균주가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연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개월마다 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 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 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 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제 조의 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및 생년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번호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명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된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근무 월수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 총 월수 및 금융투자회사당 등록 기간 다만 금융투자회사명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별 금융투자분석사 현황 및 인원수

금융투자회사별 제 조제 항에 따른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 신설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 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제목

조사분석자료의 분석대상 법인명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자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

조사분석자료의 전자문서 사본

협회와 금융투자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 항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